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이주현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김진천 의원 외 8인
- 제안일 : 2018. 10. 19
- 회부일 : 2018. 10. 19 (의안번호 : 18-96)

2. 제안이유

마포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제1조~제2조)
-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(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(제4~5조)
-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(제7조)
-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증진 센터 설치·운영(제8조)
※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
 - 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 - 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예산조치 : 향후 지속적인 예산편성 조치 필요
-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있음(기간:’18.10.15일~’18.10.19일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에 대하여

-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제8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사무에 대한 조치·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또한, 같은 법 제2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“정보접근·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.

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따라서, 이견 조례안의 “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”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‘지방자치법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이견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유무

- 서울특별시가 2018.1.4일 이견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고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다.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

- 이견 조례안은 본칙 9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 하였으며, 조문의 단어 및 문장 등이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또한, 이견 조례안 각 조항의 내용 등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한편, 이견 조례안은 발의한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구성체계와 조문의 내용을 참고·준용하여 우리 마포구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도록 작성 조문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라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의 위탁절차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

- 이견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할 경우 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민간위탁 관리·운영의 절차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문화 된 조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위탁자 선정 및 관리·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마.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: 실현 가능함

- 구청장은 “보완대체 의사소통”(AAC)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

2018년 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고 2019년에는 1,545만원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(AAC: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)

- 아울러, 이견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조례임을 고려하여 법령상, 예산상, 행정상 등의 측면에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제정후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바.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대하여

- 이견 조례안에 대해 2018.10.15일부터 10.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2018.10.19일 주민 한분으로부터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.
- 내용을 살펴 본 결과, 조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일부수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으나 사업추진상 향후 집행기관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

사. 검토 종합의견

- 위와 같이 이견 조례안이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, 실현 가능 여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아울러, 구청장이 최근 성산1동나 마포중앙도서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최초로 AAC존을 설치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향후 관내 타 지역으로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견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이견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향후 집행기관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- 특히,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,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